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00호
----------	--------

제출년월일 2026. 8. 21.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행사의 유형과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을 세분화하고,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의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행사의 적용범위를 공연, 축제, 체육행사로 별도 구분 (안 제3조제1항)
- 나. 체육행사의 인원 상한 기준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 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기한 조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6. 2. ~ 6. 22.(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및 경기도 자연재난과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를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난안전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재난안전과장 류 규 형
	팀장 직위·성명	안전점검팀장 이 상 원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윤 정 우(☎291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u>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조(적용범위) ① ----- -----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u>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u> 2. <u>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u> 3. <u>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u>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u>10일</u>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 ----- ----- <u>14일</u> ----- ----- ----- . -- -----

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7일 -----
-----.

③·④ (현행과 같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개정 2025.8.12.>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신설 2025.8.12.]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2.>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도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④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김포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밖의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점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는 제6조의 사항을 교부 조건으로 해야 한다.

④ 관계인은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같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제7조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신호봉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붙임 3

참고자료 (경기도 시·군 조례 제·개정 권고)

□ 관련 공문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 권고 요청

여름철 체육행사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군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군 옥외행사의 관리에 관한 조례상 인원 적용범위가 5백~1천명인바, 대규모 행사 인원(1천명 이상)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원 적용범위 상한 삭제
2.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한 경우 조항 마련
3. 옥외행사 관련 조례가 부재한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

붙임 권고요청 사항 1부. 끝.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수신자 수원시장(재난대응과장), 고양시장(재난대응담당관), 용인시장(재난대응담당관), 화성시장(재난대응과장), 성남시장(재난안전관), 부천시청(재난안전과장), 남양주시청(시민안전관), 안산시청(시민안전과장), 평택시장(안전총괄과장), 안양시장(안전정책과장), 서흥시장(시민안전과장), 파주시청(안전총괄과장), 김포시장(안전기획관), 의정부시장(시민안전과장), 광주시청(재난안전과장), 하남시장(안전정책과장), 광명시장(안전총괄과장), 군포시장(안전총괄과장), 양주시청(안전건설과장), 오산시청(안전정책과), 이천시청(안전총괄과장), 안성시장(시민안전과), 구리시장(안전총괄과장), 의왕시장(안전총괄과장), 포천시청(시민안전과장), 양평군수(안전총괄과장), 여주시청(시민안전과장), 동두천시장(안전총괄과장), 과천시청(안전재난과장), 가평군수(안전재난과장), 연천군수(안전총괄과)

주무관	박성진	기후지진대응팀장	김효정	자연재난과장	전결 2025. 5. 13. 후대윤
협조자					
시행	자연재난과-11240	{ 2025. 5. 13. }	접수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0층, 자연재난과 {이리동}	/ https://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8444	팩스번호	031-8008-6095	/ deight@gg.go.kr	/ 비공개(5)
문서 한 장을 인쇄할 때 이산화탄소 5g이 발생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시군^{27개}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주최·주관 후원하는 옥외행사* 개최시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점검 실시 규정
 - * 공연, 축제, 체육 등 순간 최대 관람객이 5백~1천명 미만인 행사(일부 시군은 인원 적용을 완화·강화하여 운영 중)
- 일부 시군 조례상 1천명 이상의 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행사 개최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점검의 한계를 지님
 - 지자체 점검 등이 제외된 1천명 이상의 체육행사에 대한 규정 보완 필요
- 또한, 일부 시군의 경우 옥외행사 관련 조례상 행사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여 온열질환 다수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여건 부족

□ 추진방향

- 「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체육행사 인원 적용범위를 5백명 이상으로 개정^{1천명 상한삭제}하여,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검토 중인바
-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의 “인원 적용범위” 확대(상한삭제) 검토를 추진하고,
 - 자치단체장이 안전 등을 위하여 “행사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한 시군에서도 해당 내용 마련 검토
- ※ (현행 시군 조례 적용인원) 17개 시군은 5백~1천명 이내 / 파주·안성은 3천명까지만 적용 가능
- 아울러, 옥외행사 관련 조례 미지정 4개 시군^{화성, 양주, 동두천, 연천}에서는 상기 내용 검토하여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시·군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시군	조례유무	적용기준 (인원)	해당내용(시장·군수 해산권고)
1	수원시	○	5백명 ↑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	용인시	○	500~1천명	11조(준수사항 권고)
3	고양시	○	5백명 ↑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4	화성시	×		
5	성남시	○	5백명 ↑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6	부천시	○	300~1천명	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7	남양주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8	안산시	○	500~1천명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9	평택시	○	5백명 ↑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현장 대응)
10	안양시	○	500~1천명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1	시흥시	○	500~1천명	제13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12	파주시	○	500~3천명	제11조(준수사항 권고)
13	김포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4	의정부시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5	광주시	○	500~1천명	해당없음
16	하남시	○	5백명 ↑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7	광명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8	군포시	○	5백명 ↑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9	양주시	×		
20	오산시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1	이천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2	안성시	○	800~3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3	구리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4	의왕시	○	5백명 ↑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5	포천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26	양평군	○	500~1천명	제12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27	여주시	○	500~1천명	해당없음
28	동두천시	×		
29	과천시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권고)
30	가평군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31	연천군	×		